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청렴 서울교육

서울특별시교육감-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단 체 협 약

2022. 4. 14.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감-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전 문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과 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서울특별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한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교육청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지부를 말함. 이하 “조합”이라 함)은 「헌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조합원의 권익과 근무조건 및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당사자인 교육감과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협약의 적용 및 근무조건 저하 금지】

① 교육감은 조합 활동 보장 및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관해 본 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관계 법령,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법령, 자치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다만 상위 법령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교육규칙 등으로 본 협약의 내용을 위반할 수 없다.

② 교육감은 관계 법령, 자치법규 등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이 기존에 확보한 권리 및 근무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조【성실의 의무】

교육감과 조합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제4조【타 단체와 교섭 시 의견 청취】

교육감은 교원노조 등 타 단체와 교섭 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자치법규 제·개정 및 지침 시행 시 의견 청취 등】

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원의 근무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행정지침 등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6조【조합 활동 보장】

① 교육감은 조합 또는 조합원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2. 조합의 권위와 신용을 부당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3. 정당한 조합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소속 직원에게 조합의 가입과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
5. 조합의 임원과 조합원에게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저해시키는 행위

②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무시간 중에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대회
2. 교육감과 조합 간의 단체교섭
3.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4. 상급 조직의 임원회의 및 대의원대회
5. 그 밖에 교육감과 조합이 사전에 합의한 사항

③ 교육감은 조합(지부, 지회 포함)이 산하기관(부서)장에게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 단체협약 이행 등에 대한 협의 요구 시 성실하게 임하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합에 근무시간 중 분기별 4시간의 조합원 연수시간을 부여한다.

제7조【홍보활동 보장】

① 교육감은 조합이 산하기관(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교육감은 본청 및 산하기관(학교 포함)의 지방공무원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조합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③ 조합은 산하기관(부서)장과 합의한 장소에 기간을 정하여 현수막, 벽보 등을 게시할 수 있다. 단, 산하기관(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의 현수막, 벽보 등을 즉시 철거할 수 있다.

1. 합의 장소 이외에 설치한 경우
2. 합의한 게시 기간이 지난 경우
3. 현수막, 벽보 등의 내용이 심각하게 왜곡되거나 허위인 경우

④ 교육감은 신규 임용자 및 7급 승진자 대상 연수 시 전체 조합에 30분 내외의 홍보 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전임 조합원 및 조합 간부 불이익 처분 금지 등】

① 교육감은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임을 인정하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원이 조합의 상급 조직(중앙 또는 본부)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될 시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교육감은 조합 전임자와 조합 규약에 의거 선출된 간부에게 전임 또는 조합 활동을 이유로 신분, 후생복지(연금, 건강보험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④ 교육감은 전임자의 전임해제 시나 복직요구가 있을 시 인사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 소속기관 또는 본인 희망을 반영하여 복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9조【시설 및 편의 제공】

① 교육감은 조합에서 요청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무소를 제공하고, 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 비품을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이 교육행정·연수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조합이 sen메신저, 메일,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교육감은 조합이 요청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0조【문서 및 정보 제공】

① 교육감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 활동에 필요한 문서 및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② 교육감과 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호 통지·협조한다.

1. 교육감이 조합에 통지할 사항
   가. 공무원단체 관련 각종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입법예고 사항
   나. 단체협약 이행 결과
   다. 타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및 이행계획서
   (공문, 홈페이지 등 공개된 자료에 한함)
   라. 그 밖에 노·사가 합의한 사항
2. 조합이 교육감에게 통지할 사항
   가. 조합 규약·규정의 제·개정 사항
   나. 조합 기구표 및 임원 명단

제11조【조합 행사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조합이 주최하고 지방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사, 연수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이 산하기관(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부서) 순회 및 직원 간담회(면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상생을 위한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단 워크숍 시행계획·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교육감과 조합은 단체협약 이행점검,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1. 정책협의회는 분기별 1회, 4시간 내외로 실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교섭 관련 회의로 대체한다.
2. 정책협의회 교육청 대표는 실·국장급 이상으로 하고, 2회는 교육감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 양측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정책협의회 안건은 상호 1주일 이전에 통보한다.

제3장 근무조건 개선

제13조【근무환경 개선】

교육감은 각급 학교(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소속감 제고 및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행정실 66㎡(교실 1실), 서고 33㎡, 시설관리실 33㎡, 인쇄실 33㎡ 이상의 면적 확보
2. 교직원 휴게실, 샤워실, 체력단련실 등 확보
3. 정보화 비품과 OA시설 우선적으로 설치
4.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인쇄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제14조【업무 경감】

① 교육감은 중복 또는 불필요한 각종 보고문서를 폐지하도록 노력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보고 요구를 지양한다.

② 교육감은 국회·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 시 가급적 이미 구축된 교육통계 자료를 활용한다.

③ 교육감은 국회·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 시 부득이하게 각급 학교(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게 될 경우 의원명을 명시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교육공무직 급여업무를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제15조【교원 인사업무의 효율적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근거한 교원 인사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며, 학교 내 교직원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위원회 등 참여】

① 교육감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근무조건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 있는 정책의 토론회, 포럼 등에 지방공무원(조합 포함)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휴가권 보장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휴가권이 보장되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재량휴업일에 지방공무원의 연가, 학습휴가 등 휴가권

사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개인 복무(연가, 조퇴, 외출, 지각 등) 신청 시 대면 구두 보고, 구체적 사유 기재 등을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18조【당직제도 개선】

① 교육감은 당직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숙직근무자의 익일 휴무를 보장하며, 숙직 휴무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임기제 공무원 근무조건 개선】

교육감은 전체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20조【대체인력 제도 개선】

① 교육감은 각종 연가, 병가, 특별휴가, 휴직, 퇴직 등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결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풀제를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1일 이상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기관에서 신청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제21조【모성보호·육아시간 사용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제22조【시설사업 업무추진비 반영】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시설사업 추진 시 업무추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장 지방공무원 지위 향상 및 전문성 제고

제23조【대외직명 개선 등】

① 교육감은 구성원 간 서로 인격이 존중될 수 있도록 직위가 없는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따른 안내를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급 학교 부장회의 등에 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지방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24조【조직문화 개선】

① 교육감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및 상급자의 개인적 용무(심부름, 전출·입 시 이사, 경조사, 우편물 발송, 직무와 무관한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근무 등)가 부당하게 지방공무원에게 강요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바람직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차, 다과 제공 등의 손님 맞이 업무를 관리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25조【신규 임용자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및 노동 관련 교육】

① 교육감은 신규 임용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신규 임용자 대상 연수 시 공무원 노동 관련 교육과정을 2시간 편성하고, 조합에서 추천하는 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6조【지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① 교육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의 자기부담 직무연수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효과적인 시설 관련 교육을 위해 기술직 공무원을 포함한 '교육과정 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소방, 시설, 전기, 방송 등 관련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④ 교육감은 조합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선진 노사문화 체험을 위한 노·사 합동 국외 연수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27조【연구동호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연구동호회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제28조【다수 민원 담당공무원 힐링 연수 확대】

교육감은 다량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연수가 확대되도록 한다.

제29조【시설정책사업 추진 시 의견 수렴】

교육감은 시설정책 관련 제도 및 인력수반 사업 추진 시 시설부서(교육지원청 및 시설관리본부 포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30조【수당 지급 지도 및 기준 개선】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기 작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수당 지급기준 개선 및 인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5장 후생복지 및 재해 보상

제31조【맞춤형복지포인트 상향】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복지 기본점수 및 저경력 공무원 복지점수 상향과 첫째자녀 출산축하복지점수 부여를 위해 노력한다.

제32조【휴양시설 확충】

교육감은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민간 부문 휴양시설과의 제휴를 확대한다.

제33조【체육대회 개최】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제34조【조합 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 등】

① 교육감은 조합원이 단체교섭, 정책협의회 등 조합의 공식적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업무상 재해 및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공적 업무 수행 중인 지방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운영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6장 인사 및 조직

제35조【인사관리 원칙】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기피업무 담당자 및 격무부서(기관) 근무자를 우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6조【승진·전보 예고 등】
① 교육감은 정기 인사발령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인사 시기와 규모, 승진과 전보에 관한 인사개요를 예고하도록 노력하고, 인계·인수 등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인사고충 사항이 전보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7조【지방공무원 상위 직급 확대】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상위 직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38조【정원 추가 배정 및 인원 충원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기관)의 교육행정 업무가 증가할 경우 지방공무원 정원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정원과 비교해 현원이 부족한 학교(기관)가 있을 경우 인원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대규모 조직개편 등으로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정원 감축 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제39조【신규 임용자 배치 및 임용 전 사전 연수】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시 지역별 결원현황, 생활근거지 및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신규 임용자에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임용 예정 업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수를 실시하고, 실무수습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

제40조【공로연수 확대】
교육감은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예산 및 현원 수급 관리를 고려하여 공로연수(12개월)를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1조【행정실 법제화】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이 조례에 명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2조【소방안전관리 담당부서 지정】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제43조【도서관·평생학습관 운영비 현실화 및 보존 서고 설치】

① 교육감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공과금 인상 등 운영비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도서구입비가 감소되지 않도록 운영비 현실화에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서울시의 도서관 운영 보조금이 축소될 시 최대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공간 효율성 제고와 지적 문화유산인 장서(고서 등)를 지키기 위해 보존 서고 설치에 노력한다.

제44조【연구용역】

① 교육감은 필요 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TF를 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 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제7장 행정제도 개선

제45조【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임명】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제46조【감사제도 개선】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기관) 감사 시 적발 위주가 아닌 지도 및 계도 차원의 감사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교육감은 열심히 일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여 정상참작 처리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기관)에서 감사 수감 시 감사장 마련 등 준비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이 감사 업무 수행 시 독립성을 유지하되 동료 감사자(기술직 감사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도록 한다.

제47조【부패위험성 진단평가 결과 통보】

교육감은 감사관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48조【직장 상사로부터 인권침해 등 신고 및 처리】

① 조합원은 직장 상사로부터 인권 침해 및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상사의 부패 사항 등을 인지하였을 경우 조합에 호소할 수 있고, 조합이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경우 교육감은 관련 부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치 후 그 결과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조합에 통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9조【정책제안 반영】

교육감은 조합이 요구하는 정책제안사항이 전문기관 위탁연구, 현장연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8장 교육부 등 관계기관 건의

제50조【초·중등교육법 개정】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이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직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1조【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연한 단축, 교육공무직 유사경력 및 자격증 인정 범위 확대와 관련한 법령 개정 등 의견 조회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제52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수당이 지급 또는 인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다.

1. 각급 학교 행정실장에게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2.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 업무 담당 직원에게 특정업무경비 지급
3. 각급 학교(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게 수당 지급
4. (특수업무수당)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수당을 현실화하여 월 100,000원 지급
5. (특수업무수당) 사서직 공무원의 사서수당을 5급 이상은 월 50,000원, 6급

이하는 월 3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6. (특수업무수당) 1급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직 공무원은 30,000원, 2급정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직 공무원은 20,000원, 준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서직 공무원은 10,000원을 사서수당에 가산하여 지급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상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1일 4시간, 월 57시간)이 삭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다.

부 칙

제1조【협약서 서면 작성 및 서명·날인】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육감과 조합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③ 본 협약 체결 후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협약 갱신】

교육감과 조합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교육감과 조합 쌍방은 본 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의 제·개정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이행계획서 작성, 통보】

교육감은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단체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 조합에서 이행 요구가 있을 시 이를 확인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단체협약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본청 및 산하기관(학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회의 등을 통해 안내한다.

③ 교육감은 연 1회 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이행 점검 항목을 선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 법규 등에 따른다.

제7조【협약서 보관 및 신고】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교육감과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22. 4. 14.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재형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
조합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교육청지부 대의원

원태철

서울특별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위원장

이정혜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전형준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교육청지부 지부장직무대행

배기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교육청본부 본부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교육청지부 비상대책위원장

조충회